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3 vol. 1

March 10, 2023

2023년 첫번째 주요 공정거래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3년 vol. 1)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중기부·조달청, 의무고발요청제 업무협약 개정 1. 2.	• (이슈) 의무고발요청제 업무협약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 중기부, 조달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 - 1. 6.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시스템 개편 1. 3.	• (이슈) 기업집단포털 서비스 개편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하여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1. 6.	• (이슈)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공정위,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1. 6.	• (이슈)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 (주요내용)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 11.	• (이슈) 하도급법 시행령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를 1. 12. 부터 시행 - 1. 25.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1. 12.	• (이슈)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 12. 부터 시행 - 1. 27.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 16.	• (이슈)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 행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 18.	• (이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
공정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1. 26.	• (이슈)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3년 4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함 - 2. 2.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30.	• (이슈) 표시광고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023. 1.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
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 1.	• (이슈)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2023. 2. 1. 부터 서비스를 운영
공정위, 사회관계망서비스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2. 6.	• (이슈) SNS 부당광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 6.	• (이슈)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령 및 동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3. 20.까지 입법·행정예고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 13.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 개선 및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 14.부터 3. 27.까지 입법예고 - 2. 16.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및 2. 28.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2. 16.	• (이슈)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 (주요내용) 공정위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3. 7.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공정위, 제1차 기술유통 실무협의회 개최 2. 20.	• (이슈) 기술유통 근절 • (주요내용) 공정위는 제1차 기술유통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통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
공정위장,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정책 보고 2. 23.	• (이슈)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정책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 보고함
공정위장,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실시 2. 24.	• (이슈) 2023년도 공정거래 정책 방향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
공정위, 조성진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2. 28.	• (이슈) 공정위 비상임위원 신규 위촉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3. 3. 2.자로 조성진 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함
공정위,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추진 3. 2.	• (이슈)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추진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할 계획임

이슈	주요 내용
II. 주요 소식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감독 강화 1. 6.	• (이슈) 대기업 공익법인 감독 강화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
국회·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법제법 제정 관련 논의 1. 17.	• (이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법제화 • (주요내용)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실은 2023. 1. 1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개최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추진 1. 18.	• (이슈) 고발지침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1. 18.	• (이슈)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동향 • (주요내용)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 1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공정위,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TF 발족 1. 19.	• (이슈)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TF • (주요내용)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경제학 및 법학 전문가로 구성된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회의를 개최할 계획
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기준 개정 및 C2C 플랫폼 조사 예고 1. 24.	• (이슈) 온라인 플랫폼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기준을 개정하고, C2C 거래 플랫폼 현황을 조사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플랫폼 자율기구, 오픈마켓과 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예정 1. 26.	• (이슈)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 (주요내용) 플랫폼 자율기구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 발표를 예고함
공정위,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지침 마련 예정 1. 29.	• (이슈)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

이슈	주요 내용
대법원, 공정위 벌점 부과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판결 1. 31.	• (이슈) 공정위 벌점 부과 행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 • (주요내용)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공정위, 중간재 담합 감시 강화 예상 2. 3.	• (이슈) 중간재 담합 감시 강화 • (주요내용) 공정위의 중간재 분야 담합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추진 2. 15.	• (이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공정위, 휴대전화 유통시장-요금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예정 2. 20.	• (이슈) 휴대전화 유통시장 및 요금체계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유통시장 및 요금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
한기정 공정위장, 공정거래 이슈 관련 언론 인터뷰 진행 2. 21.	• (이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힘
공정위,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 점검 시행 3. 1.	• (이슈) 공정위 조사 동향 • (주요내용) 공정위는 통신·운행 분야 및 아파트 유지보수, 주류 등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불공정 점검을 시행함
공정위, 빅테크 기업결합 신고 기준 재정립 착수 3. 2.	• (이슈) 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 (주요내용) 공정위는 ‘디지털 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정비에 착수
정부, 경제형벌 개선안 마련 3. 2.	• (이슈) 경제형벌 완화 • (주요내용)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시정조치를 부과한 이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관련 규제 개선안 검토 계획 3. 3.	• (이슈)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내부거래 관련 규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 설명 3. 3.	• (이슈)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플랫폼 독과점 문제 및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합리한 갑을관계 개선 등 2023년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

III. 국회 발의법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김성주 의원안) 국회제출 1. 12.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양정숙 의원안) 국회제출 1. 17.	• (이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정부) 국회제출 1. 18.	• (이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부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정부) 국회제출 1. 18.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부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정부) 국회제출 1. 18.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김희곤 의원안) 국회제출 2. 2.	• (이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u> <u>(김홍걸 의원안) 국회제출</u> 2. 2.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u> <u>(전봉민 의원안) 국회제출</u> 2. 3.	• (이슈)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행안위 소속 전봉민 의원은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안) 국회제출</u> 2. 16.	• (이슈)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u>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u> 2. 17.	• (이슈)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의 • (주요내용) 정무위원장은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u> <u>(박용진 의원안) 국회제출</u> 2. 20.	• (이슈)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u> <u>(정무위원장 대안) 국회제출</u> 2. 20.	• (이슈)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무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발의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u> <u>(김한규 의원안) 국회제출</u> 2. 20.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u> <u>(민병덕 의원안) 국회제출</u> 2. 23.	• (이슈)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u> <u>(윤영덕 의원안) 국회제출</u> 2. 28.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같은 취지의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3년 Vol. 1)

I. 보도자료

1. 공정위·중기부·조달청, 의무고발요청제 업무협약 개정 (1. 2.) – 1. 6.자 뉴스레터 링크

- 공정위, 중기부, 조달청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개정
 - 업무협약은 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등에 의한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간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임
 - 업무협약은 (i)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ii) 고발요청기한, (iii)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
-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발요청기한 단축)** 중기부 및 조달청(이하 “의무고발 요청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 **(자료 제공)**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기관의 고발요청기한 단축을 위하여 (i)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이력, (ii) 공정위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iii) 피해기업 일반 현황, (iv) 입찰계약일자를 사건결과(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기로 하고, (v)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는 자진신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얻은 시점에 제공하기로 함
 - **(사실관계 확인 요청절차 마련)** 의무고발 요청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무협의체 운영)** 기존 업무협약 사항 협의를 위한 부기관장 협의체에 더하여 고발요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신설
 - **(고발요청지침 개정 협의)** 의무고발 요청기관이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전속고발권 행사주체인 공정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중기부에 대한 사건 통지대상 조정)**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에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 및 사익편취행위(제47조)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변경
- 본 개정을 통하여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됨으로써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2.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시스템 개편 (1. 3.)

- 공정위는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하여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비스를 개시함
-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신고업무의 온라인화)**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i) 신고, (ii) 심사, (iii) 결과통보, (iv)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
*계열회사 변동 신고(편입/제외/유예/사명변경), 지주회사 설립/전환/제외 신고 등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른 개선)** 공정위는 (i)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 현황, 분포도 등을 확인·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능을 개선하고, (ii) 공익법인 및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신설을 반영하여 공익법인 및 국외계열사 공시자료 연계 및 분석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iii)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의 제한적 허용에 따라 기업집단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공정위가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편의성 향상)** 공정위는 (i) 간편 인증방식 도입, (ii) 데이터 검증 기능 도입 및 데이터 입력 간소화, (iii) 대표회사가 특정 소속회사에 자료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iv)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이메일 중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정위는 기업집단포털 기능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료 제출의 불편 및 부담 등을 해소하고 개정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집행을 기대한다고 밝힘

3.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1. 6.)

- 공정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함
*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외식업종 4종), 교육, 이 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종),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종)
-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배달앱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 마련 (4개 외식 업종)
 - **(배달앱 영업거점지역 설정)**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의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여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조정 조항 신설)**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
 - **(가맹점 쿠폰 발행에 따른 분쟁예방 조항 신설)**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규정
 -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13개 업종)
 -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조항 마련)**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로 하여금 동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가맹점주 동의 시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사항 명시)**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함

- (광고·판촉행사 관련사전 약정 조항 마련)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에 관한 규정 정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함
- 기타 표준가맹계약서의 미비 조항 정비
 -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의 3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명시
 - (영업양수인의 최초가맹금 면제) 가맹사업의 포괄적 영업양수 시 양수인의 최초가맹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도록 함
 - (가맹본부의 즉시 해지사유 추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제15조 제6호)에 명시되어 있으나 표준가맹계약서에서 누락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

4. 공정위,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운영 1년 연장 (1. 6.)

- 공정위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23.12.31.)하기로 결정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여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함. 또한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함
-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2023. 12. 31.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

5.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 11.) - 1. 25.자 뉴스레터

-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가 1. 12.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은 2022. 1. 11.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주요 제·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 금액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 (연동 계약 및 단가 조정에 따른 벌점으로 경감 사유 추가) 개정 시행령에서는 연동 계약 체결 비율과 하도급대금 인상 실적을 평가하여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정 협의 관련 조항들을 정비
-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개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규정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개정 시행령에서는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음. 또한, 공시의무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시 규정 및 과태료 기준 등 2개 고시도 함께 제정
- **(공공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개정 시행령에서는 입찰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는 공사 범위를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로 구체화함

6.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1. 12.) - 1. 27.자 뉴스레터 링크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최종안을 확정하여 1. 12.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기존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 범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심사지침을 적용함
 - **(시장 확정)**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다면성, 무료 서비스,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을 확정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시장지배력 평가)**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에 따른 진입장벽,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영향력,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외 이용자 수·이용빈도 등 대체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도록 규정
 - **(경쟁제한성 평가)** 기본적으로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하여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되, (i) 가격·산출량 이외의 경쟁제한효과, (ii) 연계된 다른 상품·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효과, (iii) 플랫폼의 각 측면의 상호 연관성, (iv) 혁신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 **(주요 위반 유형)**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 (i) 멀티호밍 제한, (ii) 최혜대우 요구, (iii) 자사우대, (iv) 끼워팔기를 규정하고, 각 유형별로 공정거래법상 적용 가능한 조항과 위법성 판단 시 고려요소 등을 구체화

7. 공정위,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 16.)

- 공정위는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대규모내부거래 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개정사항)
- **(기업집단현황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함(고시 개정사항)

- 기업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한곳에 배치하고 ESG 관련임을 표기하며, 비계열사로부터 매입한 물류, IT서비스 거래금액은 공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공시양식 개정사항)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변동 항목 삭제(법 개정사항)
-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75%까지 확대하며(고시 개정사항),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8.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 18.)

-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감염병 확산 등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화장품 등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추가로 도입함. 2022. 6.에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도입된 데 이어 총 18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도입됨
- **(계약 중도해지 사유 구체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은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함
-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9. 공정위,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1. 26.) - 2. 2.자 뉴스레터

- 공정위는 2023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쟁 촉진)**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등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 **(공정한 거래기반)**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용 예외사항 악용시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며, SW·콘텐츠·뿌리산업 등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집중 점검
 - **(대기업집단 정책)** 편법승계·부실계열사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공시제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소비자 보호)**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방지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을 보호
- 공정위는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심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강화·교육프로그램 혁신 등을 통해 내부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함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3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2023. 1. 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2023. 2. 14.)
- 개정된 표시광고법은 (i)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ii)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였음
- 공정위는 개정된 표시광고법이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11. 공정위,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 1.)

- 공정위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2023. 2. 1.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함
- 본 시스템 개편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이후 접수심사통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기능이 신설·보강됐으며, 각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업결합 신고의 온라인 신고 범위 확대)** 간이신고(현행) 뿐만 아니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온라인 신고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기업결합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짐
- **(온라인 신고 시 접수증 자동 발급)** 신고서 제출 이후 접수일, 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가 해소됨
- **(실시간 심사 진행사항 조회)** 온라인 신고 이후 신고회사에게 기업결합 심사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임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보완자료 온라인 제출)**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공문 작성-송달-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에 마련되어,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
- **(심사례 검색 등 심사지원 기능 신설)** 기업결합 심사례의 시장현황 DB 구축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그간 축적된 개별 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 시장현황 자료를 유사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화면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조회, 심사 현황 관리, 심사기간 자동 계산, 통계 산출, 과태료 관리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심사업무 효율화도 함께 추진

12. 공정위, 사회관계망서비스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2. 6.)

-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음
-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1,037건이고, 이를 포함한 자진시정 건수는 총 31,064건임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SNS 점검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하여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며, 점검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하여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힘

13. 공정위,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2. 6.)

-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령 및 동법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3. 20.까지 입법·행정예고함
-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 계약서 미교부, ② 계약서 미서명, ③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됨

14.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 13.) – 2. 16.자 뉴스레터 및 2. 28.자 뉴스레터

- 공정위는 (i) 기업결합(M&A) 심사제도 개선 및 (ii)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 27.까지 입법예고
-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관련 주요 내용**
 -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 확대)**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i)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ii) PEF 설립, (iii)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 도입)** 기업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성 해소에 충분할 경우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조건 및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을 취소하고 정식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관련 주요 내용**
 - (i) 사건의 당사자 등은 심의절차에 필요한 서면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ii)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전자심판시스템(가칭)을 통하여 의결서 등 심의문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및 통지할 수 있음. (iii) 이때, 동의하였음에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송달 또는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
- 공정위는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계획임

15.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2. 16.) – 3. 7.자 뉴스레터

- 공정위는 2023. 2. 16.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
 - 조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함
 - * 조사공문 구체화, 자료제출 관련 이의제기절차 신설,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
 - **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변론기회 확대, 자기사건 조회시스템 개편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 장기·시효임박 사건에 대한 단계별 특별관리 체계 마련,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 단순 질서위반 사건 지 자체 이양

-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사건처리 역량 강화
 -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내부교육 강화
-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
 -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여 사건처리의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심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가 분리 운영을 강화

16. 공정위,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 개최 (2. 20.)

- 공정위는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함
- 공정위와 경찰청은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신고·제보 채널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역량을 확충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갖출 예정임

17. 공정위원장,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정책 보고 (2. 23.)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 (i)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및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ii) 신규 사업자와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
 - **(소비자 권익 보호)** (i)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광고 범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ii)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장애 시 배상책임을 확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며, (iii)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할 예정

18. 공정위원장,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실시 (2. 24.)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실시
- 한 위원장은 (i)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ii)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iii)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iv)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네 가지 핵심과제로 설명함
 - **(혁신경쟁 촉진)** 앱 마켓, 반도체 등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빅테크 기업의 M&A를 면밀히 심사하며, 전문가 TF를 통해 법제개선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촉진. 또한, OTT 및 연예기획사 거래관행 등을 점검하여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하도급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 더불어,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지원 등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 **(대기업집단 제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공시집단지정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대기업시책 합리화

- **(소비자 권익 보장)**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하고 C2C 사업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등 소비자 안전 및 권익 보호

19. 공정위, 조성진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2. 28.)

- 공정위는 2023. 3. 2.자로 조성진 교수를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함
 -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함
 - 금번 인사는 최윤정 전(前)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임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한국산업조직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실증적 산업조직론 분야의 전문가임

20. 공정위,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추진 (3. 2.)

-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할 계획임
- 공정위는 (i) 진입제한, (ii) 사업자 차별, (iii) 사업활동 제한, (iv) 소비자 이익 저해 등 경쟁제한성이 높은 자치법규를 개선과제로 선정함
 - **(진입제한)**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지역시장의 진입을 제한하여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및 결산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역 내 변호사 및 회계사로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할 예정
 - **(사업자 차별)** 다른 사업자와의 경쟁을 위한 경쟁수단 또는 경쟁유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켜 시장 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할 예정
 - **(사업활동 제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하는 영업방침,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제한하여 시장내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로 지자체 운영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에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할 예정
 - **(소비자 이익 저해)** 특정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소비자의 선택이나 정보제공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로 지자체 운영 캠핑장 또는 체육시설 등이 운영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개선할 예정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감독 강화 (1. 6.)

-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으로, 대기업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대기업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많은 공익집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공정위의 201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공익법인이 가진 주식은 주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되었고, 대기업 공익법인이 공익 목적을 위해 벌어들였거나 지출한 비중은 일반 공익법인의 절반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해 지정된 76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있는 곳은 67곳(88.2%)에 달하였으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익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에 달하였음
-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사실상 계열사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의심하고, 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

2. 국회·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규제법 제정 관련 논의 (1. 17.)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실 주최로 2023. 1. 1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개최됨
- 백 정무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와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빠르게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시장과 해외법제 등을 고려하여 현행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임을 밝힘
-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자사제품 우대·입점 업체 차별 금지, 무분별한 기업인수 규제, 공정위에 알고리즘 조작 등을 파악할 전문 감독 부서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3.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추진 (1. 18.)

-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개편을 진행 중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 작업 중이라고 보도
- 공정위는 작년 진행한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기소율이 높은 사건 및 법 위반으로 판결된 사례를 고발지침에 반영하려는 목적
- 공정위는 고발지침 개정 방향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있고,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4.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1. 18.)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1. 1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5. 공정위,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TF 발족 (1. 19.)

-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경제학 및 법학 전문가로 구성된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TF는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이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임
- 최근 국회에서 새로운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TF 참여 학자 대다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어 새로운 입법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짐

6. 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기준 개정 및 C2C 플랫폼 조사 예고 (1. 24.)

-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더 주의 깊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현황을 살펴 나날이 증가하는 C2C 분쟁에 대응하겠다고 밝힘
- 이는 공정위의 신년 주요 과제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 문제 해결’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됨

7. 플랫폼 자율기구, 오픈마켓과 배달앱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예정 (1. 26.)

- 플랫폼 업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플랫폼 자율기구는 오픈마켓·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플랫폼 자율기구는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회의체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자율기구는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들어올 때 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약관 동의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플랫폼 업계는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쓰려면 기존 체계를 모두 바꿔야 하는 만큼 약관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8. 공정위,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지침 마련 예정 (1. 29.)

-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과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행정 예고할 계획임
- 다만 공정위는 외국인 및 외국 회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9. 대법원, 공정위 벌점 부과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판결 (1. 31.)

- 대법원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행위가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벌점 부과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는 피고(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실제 입찰 제한이나 영업 정지 처분을 하면 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함

10. 공정위, 중간재 담합 감시 강화 예상 (2. 3.)

- 공정위는 최근 중간재 담합 혐의가 있는 일부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함
- 공정위는 2023. 1. 26.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간재 담합 근절 의지를 강조하며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가격상승 및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중간재 담합으로 지목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공정위의 위 현장조사가 중간재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조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

11.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추진 (2. 15.)

-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증가함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기로 변경한바 있으며, 내년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임

12. 공정위, 휴대전화 유통시장-요금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예정 (2. 20.)

-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유통시장 및 요금체계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임

-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13.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이슈 관련 언론 인터뷰 진행 (2. 21.)

- 이르면 3월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 필요성 및 조정 정도와 관련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하여 연내 개선안 발표 예정. 지정기준 조정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예정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다양한 반칙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완료하였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임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실효적 자율규제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적극적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자율규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한다면 공정위도 협조할 것임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산업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를 처리할 것임
-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광고분야를 시작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임

14. 공정위, 민생 밀집 분야 불공정 점검 시행 (3. 1.)

- 공정위는 통신·은행 분야 및 아파트 유지보수, 주류 등 민생 밀집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불공정 점검을 시행함
- 이는 대통령의 공정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는 지시 및 지난 1월에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과제’에서 민생 분야를 3대 주요 감시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임

15. 공정위, 빅테크 기업결합 신고 기준 재정립 착수 (3. 2.)

- 공정위는 ‘디지털 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정비에 착수함
- 공정위는 주요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여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신고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임
- 한편,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 규제와 관련하여 2023. 5. 시행예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피인수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음

16. 정부, 경제형벌 개선안 마련 (3. 2.)

- 정부는 기업투자와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분야의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며, 법제처·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하여 개선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먼저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임

17. 공정위,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관련 규제 개선안 검토 계획 (3. 3.)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내부거래 관련 규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임
- 공정위는 (i) 완전모자회사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합리적 규율방안에 대한 검토, (ii)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판례 또는 심결례에 대한 분석, (iii)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거래 저해성 및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임

18.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 설명 (3. 3.)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조찬 강연회에 참석하여 공정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함
 - **(디지털 시장)**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및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불합리한 갑을관계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i) 디지털 시장에서의 거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다크패턴 및 눈속임 상술 등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ii) 중고거래의 증가에 따라 C2C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분쟁 해결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
 - **(시장 경쟁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장은 (i)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ii)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iii) 납품단가연동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대기업 집단 제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지원 및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해 잠식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라고 설명
 - **(공정위 조직 개편)**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해 4. 14.부터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벽히 분리하고, 조사와 심판 부서 인사이동 제한도 강화할 것이며,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것임을 밝힘

III. 국회 발의법안

1.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성주 의원안) 국회제출 (1. 12.)

-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하도급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안 제2조 제5항 및 제13조 제11항 제1호)
 - 현행 하도급법은 (i)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고, (ii) 반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취지임

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양정숙 의원안) 국회제출 (1. 17.)

-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i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안 제9조), (iii)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며(안 제12조), (iv)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3.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정부) 국회제출 (1. 18.)

-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i)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ii)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iii)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4.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정부) 국회제출 (1. 18.)

-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i)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

한 경우, (ii)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30조)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5.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정부) 국회제출 (1. 18.)

-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6.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김희곤 의원안) 국회제출 (2. 2.)

-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은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 비상장 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안 제27조제1항제1호), (ii)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0조제3항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7.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김홍걸 의원안) 국회제출 (2. 2.)

- 외통위 소속 김홍걸 의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제2항제6호의2 및 제33조제2항 신설 등)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8.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전봉민 의원안) 국회제출 (2. 3.)

- 행안위 소속 전봉민 의원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 등의 처벌 범위를 현행법 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등)하는 방문판매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9.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 의원안) 국회제출 (2. 16.)

-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함(안 제5조)
- 공정위는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함(안 제6조)
-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노출순위를 제3자의 재화 등에 비해 우대하지 아니함(안 제9조)

10.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2. 17.)

- 정무위원장은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2023. 2. 27.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안 제18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8항 신설)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 명확화(안 제22조제5항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
 - 기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결손처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 준용(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안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제2항제11호·제12호 신설)

1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박용진 의원안) 국회 제출 (2. 20.)

-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헌법상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한(안 제2조제1호 및 제116조 제1항)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12.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정무위원장 대안) 국회 제출 (2. 20.)

- 정무위원장은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되었던 공개정보의 검색과 소비자피해에 관한 자료 제공·공유 요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안 제27조)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을 발의함

13.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김한규 의원안) 국회 제출 (2. 20.)

- 정무위 소속 김한규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 또는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안 제14조의3)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14.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민병덕 의원안) 국회 제출 (2. 23.)

-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은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한(안 제15조의6 등)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15.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윤영덕 의원안) 국회제출 (2. 28.)

- 국회 정무위 소속 윤영덕 의원은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함으로써 시장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i) 시·도지사에게 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 제1항), (ii)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며(안 제22조 제2항), (iii)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중복 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안 제22조 제4항), (iv) 시·도지사가 조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고(안 제23조의2 제1항), (v) 시·도지사가 서면실태조사(안 제22조의2) 및 법을 위반한 발주사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5조의5 제1항)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같은 취지의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